

제 18 장 노동

제 18.1 조 기본 노동권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한다)의 회원국으로서의 자국의 의무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 속조치(1998년)(이하 “ILO선언”이라 한다)에 따라, 자국의 법령과 그에 따른 관행에서 ILO선언에 기술된 바와 같은 원칙들을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8.2 조 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1. 당사국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18.1조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과 규정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

2. 면제 또는 이탈이 ILO선언에 기술된 원칙과 불합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18.1조를 이행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하거나,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할 것을 제의하지 아니한다.

제 18.3 조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의 노동법 또는 규정상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인이 자국의 노동법 및 규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 준사법, 사법 또는 노동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 및 규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할 것을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그 당사국의 노동법 및 규정상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 및 규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한다.

제 18.4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노동부 및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노동협의회를 설치한다.
2. 노동협의회는 제18.5조에 따른 노동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안을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회합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 부서 역할을 하고 제18.5조에 따른 노동 협력 활동의 조정을 포함하여 노동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부서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하고 유지한다.

제 18.5 조 노동 협력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부속서 18가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협력 활동을 개시하기로 약속한다.

제 18.6 조 노동 협의

1.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 부서에 그러한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사안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 부서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노동협의회가 소집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8.7 조 분쟁 해결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8가

협력

1. 노동부 및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은 다음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가. 노동 사안에 대한 협력 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 나.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활동 개발
 - 다. 각 당사국의 노동법, 규정 및 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 그리고
 - 라.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관행 및 ILO선언에 반영된 원칙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정보 교환
2. 양 당사국간 협력 활동은 다음의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상호 관심 정책이슈 및 그것의 효과적인 적용: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고용의 비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 직업상 보건 및 안전, 작업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고용기준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 · 규정 · 관행 및 이행
 - 나. 노사관계: 노 · 사 · 정 간 협력 및 분쟁해결의 형태
 - 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및 실업지원 프로그램
 - 라.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관련 강사의 양성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 기술적 · 직업적 훈련, 노동 행정기관 및 재판소의 제도적 ·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양 당사국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훈련 교육과정의 개발
 - 마. 이주노동자: 각 당사국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정보의 보급
 - 바. 기술적 사안: 생산성 향상, 최적 노동관행의 장려 및 기술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 방법론 및 경험
 - 사. 노동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노동자와 고용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통계와 노동시장 정보의 교환, 그리고
 - 아. 노동에 대한 협력 발의의 추가적 촉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3. 제2항의 협력 활동은 다음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 가. 학습 방문을 포함한 대표단, 전문가, 학자, 교사 및 강사의 교류
 - 나. 발간물 및 연구 논문을 포함한 정보, 표준, 규정, 절차 및 최적 관행의 교환
 - 다. 양 당사국 각각의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간 대화의 장려
 - 라. 공동회의, 세미나, 워크숍, 회의, 훈련, 대외접촉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조직
 - 마. 협작 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 바.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가 관여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 연구사업, 연구 및 보고
 - 사. ILO와 같은 국제 협의체 내에서의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 그리고
 -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 교류 또는 협력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입법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